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7.

발 의 자 : 박홍배 · 박 정 · 윤종균
임오경 · 윤준병 · 김태선
이수진 · 진성준 · 이용우
박정현 · 민병덕 · 안호영
김남근 · 강준현 · 전진숙
강득구 · 모경중 · 복기왕
최혁진 · 김우영 의원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, 신용대출,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,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.

현재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·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,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·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.

이에 본 개정안은 법원이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

에 해당하는 경우, 채무자에게 주거·고용·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 대하여 주거·고용·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·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(안 제573조의2 및 제587조의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12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편 제8장 제1절에 제5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73조의2(청년 채무자에 대한 지원) ①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 때 채무자가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주거·고용·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 대하여 주거·고용·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·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편 제1장에 제5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7조의2(청년 신청권자에 대한 지원) 제573조의2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파산선고”는 “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”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한 파산사건,
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73조의2(청년 채무자에 대한 지원) ①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 때 채무자가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주거·고용·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</u> <u>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 대하여 주거·고용·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·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<u>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587조의2(청년 신청권자에 대한 지원) 제573조의2의 규정은</u>

	<u>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파산선고”는 “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”으로 본다.</u>
--	--